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서훈의 영예를 훼손하는 비위에 대한 서훈 취소〉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39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진성준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5.
3. 회 부 일 : 2025. 12.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이 취소되는 요건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고, 「정부 표창 규정」은 현행법의 서훈 취소조항을 적용하여 대통령 표창 등을 취소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이 이후에 조세포탈, 세금 체납,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등 모범납세자 표창의 영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서훈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모범납세자 표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등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서훈의 영예를 손상하는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훈장 및 포장이 외에도 정부 표창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항제1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서훈의 영예를 현저히 손상하는 비위”를 서훈 취소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서훈(훈장·포장) 수여 이후 발생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취소 근거를 신설하여 상훈 및 정부포상 제도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3. (생략) ② ③ (생략)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 ----- ----- ----- ----- -----.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서훈의 영예를 현저히 손상하는 비위(非違)를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3.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위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상훈은 국가가 개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수여하는 최고 수준의 영예로서, 그 수여 및 취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¹⁾

현행법은 서훈 취소 사유를 ① 서훈 공적의 허위, ②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③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서훈 취소를 제한하고 있음.²⁾

이는 서훈의 영예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예외적·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수훈자의 명예와 신뢰를 보호하고, 서훈 취소의 남용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편, 정부포상³⁾의 한 유형인 모범납세자 포상은 ‘납세자의 날’에 산업훈장·산업포장 등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장관·국세청장 표창 등 다양한 형태로 수여되며, 모범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공공서비스 요금 할인 등 세정·사회적 우대 혜택⁴⁾이 부여되고 있음.

1) 「상훈법」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7조(서훈의 확정)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정부포상’은 「상훈법」에 따른 서훈(훈장·포장)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을 통칭하는 개념

4) 세무조사 유예(3년), 철도운임 할인(1년),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1년), 의료비 할인, 금융우대 등

그런데 최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후 국세 체납, 소득신고 누락,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모범납세자 자격이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⁵⁾ 현행 제도상 이들에 대한 서훈 또는 정부 표창 취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하여 ‘모범적인 납세자’라고 보기 어려운 자가 정부포상을 계속 유지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모범납세자 제도뿐 아니라 서훈 등 정부포상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나아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⁶⁾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8조제1항제1호에 “서훈의 영예를 현저히 손상하는 비위(非違)를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형량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기존 서훈 취소 체계를 비위의 내용과 정도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보완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현행 「정부표창규정」이 「상훈법」상의 취소 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⁷⁾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훈·포장뿐만 아니라 정부표창의 취소 사유도 함께 확대되어 서훈 등 정부포상 제도의 공정성과

(출처: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

5) 한국경제, “국세청, 모범납세자 ‘먹튀’ 잡고도…반년 지나 ‘자격 박탈’”, 2023.10.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094648i>

국세신문, “거짓 신고 적발돼 ‘모범납세자’ 취소…6년간 자격박탈 152건”, 2024.9.15.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40915.99099004849>

6) 조세플러스, “모범납세자 제도, 국세행정 신뢰 훼손하고 있어”, 2022.10.12.

<http://www.joseplus.com/news/newsview.php?ncode=1065592323341222>

7)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표창의 취소) 제18조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별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시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시상을 취소한다.

신뢰성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는, 첫째, “서훈의 영예를 현저히 손상하는 비위”가 현행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와 동등한 수준의 중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둘째 그 비위의 유형·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현행법 제8조제1항 각 호는 수여된 서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서훈제도의 영예성과 본질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한정·열거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서훈취소 제도를 “수여된 서훈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서훈의 영예성을 수호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서훈제도의 본질과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아,⁸⁾ 서훈취소가 제도의 예외적 안전장치임을 전제하고 있음.

이에 비추어볼 때,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예시로 든 조세포탈 및 국세 체납 등 일부 비위행위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서훈·표창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의 중대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여지는 있으나,

“서훈의 영예를 현저히 손상하는 비위”라는 문언 전체가 곧바로 현행 각 호와 동등한 수준의 ‘서훈 취소가 정당화되는 극히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규율 대상 범위가 넓고 내용이 다소 추상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8) 대법원 2015.4.23. 선고 2012두26920 판결

또한, 비위의 구체적 유형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임.

서훈 취소는 이미 부여된 국가 최고 영예를 박탈하는 불이익 처분으로서 수훈자의 명예와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⁹⁾ 대법원 역시 서훈취소를 비례·평등·신뢰보호 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는바,

이러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취소 규정은 국민이 그 내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개정안은 “영예를 현저히 손상하는 비위”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만을 법률에 두고,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유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 방식의 타당성은 기본적·본질적 사항까지 하위법령에 맡기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과의 관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모범납세자로서 서훈·표창을 받은 후 조세포탈 등 명백한 비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목적은 타당해 보이나,

정부포상제도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의 형태로 “서훈의 영예를 현저히 손상하는 비위”의 유형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은, 현행법 제8조제1항 각 호와 동등한 수준의 엄격성과 명확

9) 서훈 취소는 국가의 공식적인 공적 인정이 철회되는 것으로서, 그에 연동된 각종 금전·복지·예우(독립·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연금·지원 등)가 중단되고, 수훈자와 유족에 대한 역사적 평가 및 자긍심에도 영향을 미침.

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입법목적에 비추어 비위의 유형과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법률에서 서훈 취소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의 기본적인 유형과 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수여된 서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중대한 비위로 한정된 뒤 그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을 고려한 입법기술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서훈 취소는 수훈자의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그 근거 규정에는 엄격한 명확성이 요구되나, 개정안의 “서훈의 영예를 현저히 손상하는 비위를 한 경우”는 그 개념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과의 충돌 소지 및 자의적 법해석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8

참고 1

훈장 및 포장의 종류와 등급별 명칭

훈장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포장
 무궁화대훈장	등급없음					
	수여대상 : 대통령·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수여대상 : 건국 또는 국기를 공고히 한 유공자					
 국민훈장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국민포장
	수여대상 :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 유공자					
 무공훈장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포장
	수여대상 : 전시(비상사태), 전투참여 유공자					
 근정훈장	청조	황조	홍조	녹조	옥조	근정포장
	수여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무 정려자					
 보국훈장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보국· 예비군포장
	수여대상 :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수교훈장	광화대장,광화장	흥인장	승례장	창의장	숙정장	수교포장
	수여대상 : 국권 신장, 우방과의 친선 유공자					
 산업훈장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산업포장
	수여대상 : 국가산업발전 유공자					
 새마을훈장	자립장	자조장	협동장	근면장	노력장	새마을포장
	수여대상 : 새마을운동 유공자					
 문화훈장	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	문화포장
	수여대상 :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체육훈장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체육포장
	수여대상 : 체육발전 유공자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혁신장	웅비장	도약장	진보장	과학기술 포장
	수여대상 : 과학기술발전 유공자					

개인표창 수장



대통령표창 수장



국무총리표창 수장

단체표창 수치



대통령표창 수치



국무총리표창 수치

참고 2**최근 10년간 훈격별 정부포상 현황**

(단위 : 점)

구분	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016	30,667	16,450	4,425	4,846	4,943
2017	30,732	16,874	4,110	4,885	4,859
2018	31,213	17,033	4,431	4,475	4,394
2019	35,447	19,189	5,496	5,505	5,237
2020	35,867	20,126	5,970	5,488	5,154
2021	36,140	20,522	5,962	4,963	4,686
2022	37,540	21,801	6,410	4,704	4,625
2023	37,019	22,069	5,748	4,653	4,549
2024	37,953	22,876	5,813	4,632	4,632
2025	37,078	23,298	5,103	4,384	4,293
계	349,656	200,238	53,468	48,535	47,372